

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592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나59228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626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석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철

변론종결 2023. 4. 13.

판결선고 2023. 5. 1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626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350,000원 및 그중 4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E 아파트 분양대행권 매수

1) 원고는 2010. 7. 15.경 D으로부터 향후 E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행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사건 분양독점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매수하고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4. 10.경 D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D을 만나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1. 4. 1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2019.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12. 9.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9차전140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유체동산압류 및 원고의 대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원고가 운영하던 광양시 G, 2층 H독서실에서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라 한다).

2) 원고는 2020.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4,3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2020. 1. 1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방법 및 약정내용’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 대한 채권 5,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감면한다는 내용의 채무감면요청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4,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J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비용 1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잔여채무액은 전액 감면 처리된다는 내용의 감면종결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8, 12 내지 16,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분양독점권의 대금으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D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가 취소됨으로써 D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대금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와 관련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유체동산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4,4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환약정서는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기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준소비대차의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환약정서는 원고가 공박, 경술 혹은 무경험으로 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착오 내지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D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D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의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환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변제약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가 아님을 알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에 따른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11. 4. 10.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2011. 4. 10. 피고가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계약을 한 상대방사자는 원고가 아닌 D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D과 기존 거래를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서에는 D이 피고에게 정산할 내역 부분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독점권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입금한 5,000만 원 부분의 기재가 되어 있는바, 피고 스스로도 위 5,000만 원은 피고와 D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채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1. 3. 20.에도 D으로부터 E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만약 D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인수하지 못할 때에는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독점권의 매도인은 D이고, 분양대행권을 확보할 책임 역시 원고가 아닌 D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피고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D이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E 아파트 프리미엄 값을 지불하고 분양대행 권한을 D에게 사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D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매수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D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D은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원고가 안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매도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대신 지급해달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양독점권을 매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가 D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양독점권의 대금으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가 해제됨으로써 D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금에 갈음한 것으로, 그 실질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환약정서에 따른 상환약정의 효력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데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환약정서는 “상환방법 및 약정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원채무금액 : 4,300만 원’, ‘채무내역 : 금전소비대차 약정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환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기존채무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이 사건 분양독점권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금전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준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독점권 매매와 관련한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채무인 위 매매대금반환채무는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상환약정서에 따른 신채무인 대여금반환채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4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환약정서 작성 및 위 4,400만 원의 지급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한편, 피고의 유체동산압류 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1. 9. 원고가 운영하던 독서실에서 독서실 운영에 필수적인 독서실 책상 등 집기 등에 대해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한 사실, 그러자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 10. 곧바로 피고에게 그 집기 등의 가액(572만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한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변제거절에 따른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상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임의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원고의 변제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의 지급이 협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오정민, 판사 정수현